

"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분쟁조정제도 및 민원신고센터 활성화 안내

1. 건설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을 받아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75.12월 건설업법 개정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이어 '88. 12월 건설업법 개정과 '89. 7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부사항을 확정·운영중인 제도입니다.

2. 동 제도는 건설공사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다수 당사자간 분쟁의 원만한 처리 및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조정절차의 참가 및 조정과정에서의 탈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은 조정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건설분쟁조정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도록 2004.12.31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2005.7.1.부터 시행)한 바 있으니, 분쟁발생시 적극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지난 1.20일부터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를 운용하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함과 동시에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